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7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김문수 · 이광희 · 민병덕
이수진 · 김남근 · 김우영
양부남 · 민형배 · 신정훈
최혁진 · 이건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전제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의 인구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어,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가 심각한 농산어촌지역 읍·면(邑·面)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읍·면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관할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도 인구감소 대응의 책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및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교육 경비 보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반시설 설치 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라. 출입국관리 특례의 요청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함(안 제26조제1항).

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시·도가 대응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속하는”을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의”를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의”를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인구감소지역의”를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속하는”을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속하는”을 “속하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속하는”을 “속하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속하는”을 “속하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u>속하는</u>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u>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u> ----- ----- -----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u>인구감소지역의</u>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u>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u> ----- ----- ----- ----- -----

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
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
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②
(생략)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
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
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⑫ (생략)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
례)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
례) ① -----

② (생략)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② (생략)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속하거나 인구감소관
심지역을 관할하는-----

④ -----

-----속하거나 인구감소관
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⑤

<u>속하는</u> 시·군·구”로 본다. ⑥ (생 략)	<u>속하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u> <u>관할하는</u> -----. ⑥ (현행과 같음)
---------------------------------------	---